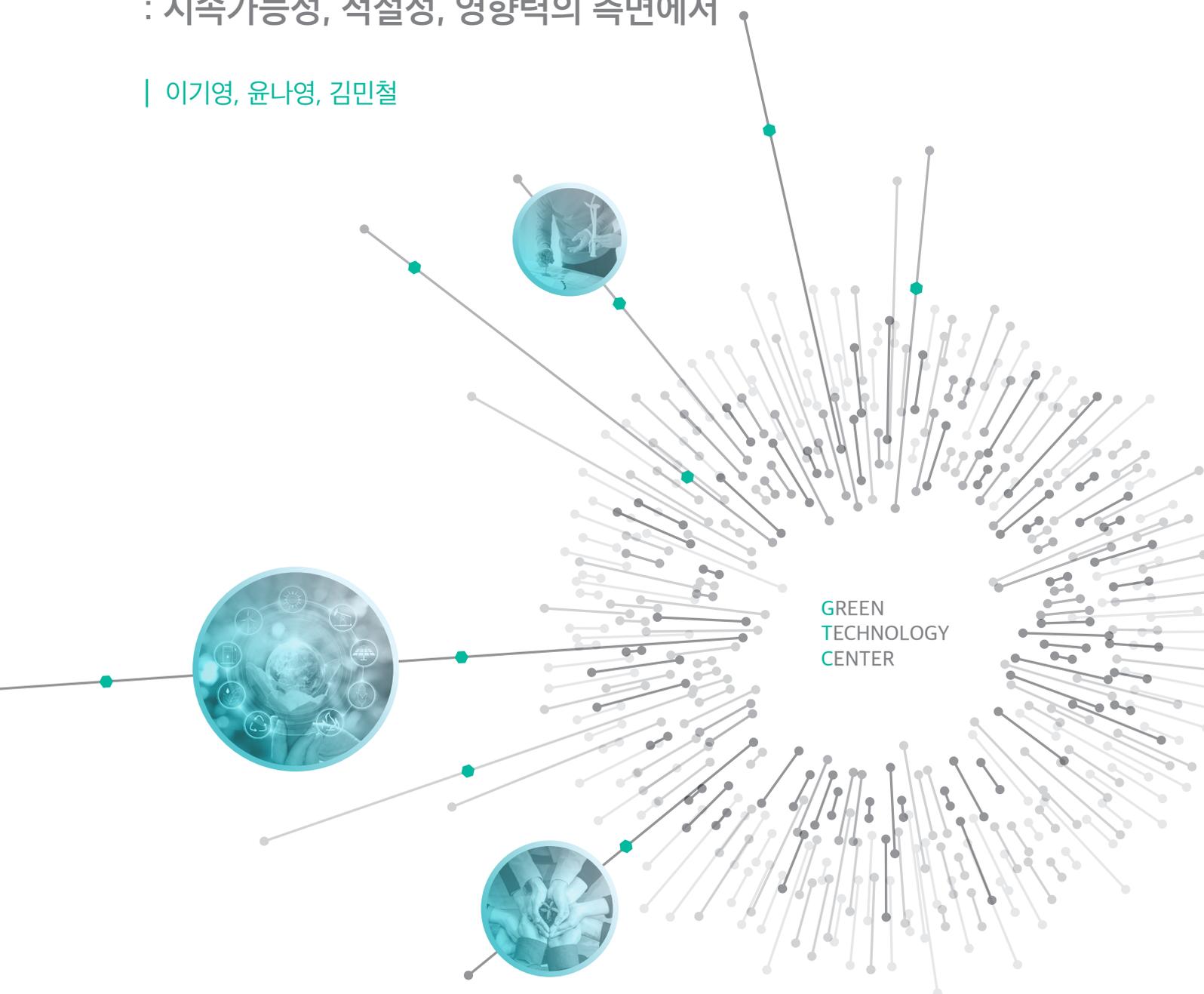


## 국가협력전략(CPS)에 기후변화 대응관점을 포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 지속가능성, 적절성, 영향력의 측면에서

| 이기영, 윤나영, 김민철



## 국가협력전략(CPS)에 기후변화 대응관점을 포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 지속가능성, 적절성, 영향력의 측면에서

| 이기영, 윤나영, 김민철

# 국가협력전략(CPS)에 기후변화 대응관점을 포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 지속가능성, 적절성, 영향력의 측면에서

| 이기영, 윤나영, 김민철

| CPS, 기후변화 주류화, 국제개발협력, 그린 ODA, 기후렌즈.

- |   |                                   |           |
|---|-----------------------------------|-----------|
| 1 | 연구배경·목적과 CPS의 특징                  | p. 1~4.   |
| 2 |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 p. 5~6.   |
| 3 | CPS에 기후변화 대응관점 반영을 위한<br>정책적 고려사항 | p. 7~18.  |
| 4 | 결론                                | p. 19~20. |
|   | 참고문헌                              | p. 21~23. |

# 요 약

## 1. 기후변화 주류화 국가협력전략(CPS)의 의미와 연구의 분석틀

-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이하 CPS)에서 기후변화 주류화가 요구됨.
  - 현재 한국은 제3기 CPS를 수립하는 상황으로, 그간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 streaming)에 포함되어 온 기후변화 주류화 관점을 별도로 확립할 적기로 보임.
    - ※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 Climate Change)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 정책, 사업 등에 기후변화 위험, 기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 OECD, UNDP 등에서 기후변화 주류화 방법을 연구하였고 CPS수립 및 평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존재함.
- ◆ 본 연구에서 기획으로서 ①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② 환류체계의 제도화 ③ 안정적인 조직 및 자원 확보 ④ 이해관계자 참여경로 구축이 구현되어야 하며, 기후 주류화 관점에서 ① 기후 관련 취약성을 고려한 국가선정 ② 기후관련 구체적 성과자표의 설정 ③ 전략 부문의 기후주류화 ④ 기후 변화를 고려한 전략 수정을 CPS 수립의 고려요인으로 설정함.

## 2. 기후변화 주류화 반영을 위한 고려사항

- ◆ 기후변화와 관련한 명확한 성과 목표와 환류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법」에 기후변화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CPS 수립에서 평가까지 환류체계 속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량강화를 제도화
- ◆ 안정적 조직과 재원을 확보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경로를 구축하여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기후변화 이해관계자들을 위촉하고 민관협력사업도 장려
- ◆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안정적인 지표를 CPS 수립 및 환류에 도입하는 안을 제시
  - 1·2기 중점협력국 선정이 소득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면 3기부터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반영
- ◆ 그 외 국가전략에 기후전략을 반영하고 수원국 전략 변경에 따른 유연한 전략수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CPS에 기후모니터링을 2년 이내의 짧은 주기로 실시할 것을 권고



## 연구배경·목적과 CPS의 특징

### 1.1 배경

- ◆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 Climate Change)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 정책, 사업 등에 기후변화 위험, 기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개발협력의 목적<sup>1)</sup>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관점임.
  - 개도국은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재해 방지를 위한 사회·제도적 안 전망의 부재로 인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며(이희연, 2014), IPCC 4차 평가보고서도 기후변화와 빈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함.
-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이하 CPS)에서 기후변화 주류화가 요구됨.
  - CPS란 양자원조 체제에서 국가별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으로 무상 및 유상원조에서 자원배분의 기준이 되므로(이재완, 2013), 기후변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PS 단계부터 명확한 기후변화 주류화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 OECD(2019)는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결과와 개입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개발협력에서의 기후변화 고려를 강조하고 있음.
- ◆ 그간 한국은 개발협력에 있어 CPS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 주류화를 환경주류화에 포함하여 온 바 리우마커 등 기후변화 대응 지표성적은 저조함.
  - 또한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개발도상국의 협력수요에 따라 중점협력국의 CPS가 결정되는데, 경제적 발전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미흡
  - 국제협력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지침, 구체적 정책과 전략 및 이행목표 등이 부족한 점도 기후변화 대응관점이 CPS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1) 1977년 OECD-DAC는 '경제성장과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대외원조의 궁극적 역할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원조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중시되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중시

- ◆ 현재 한국은 제3기 CPS를 수립하는 상황으로, 그간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 streaming)에 포함되어 온 기후변화 주류화 관점을 별도로 확립할 적기임.
  - 2018년 OECD DAC는 한국의 CPS에서 기후변화 등 범분야 이슈의 주류화를 위한 계획·지침을 강화하여 전략체계에 포함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은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함(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 개발협력 시행기관인 KOICA와 EDCF는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하였으나, 거시적 지침인 CPS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주류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 기후변화 주류화 관점의 CPS 수립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세부이행계획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취지인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전략과도 부합함.

## 1.2 목적

- ◆ 기후변화 주류화를 반영한 CPS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검토하고, 향후『국제개발협력기본법』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함.
  - 최근「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2020.5.26. 전부개정, 2020.11.27. 시행, 법률 제 17302호)되며 양자협력의 기준이 되는 CPS의 중요성을 강조<sup>2)</sup>하고 있음. 하위법령 제정시 CPS 수립 시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음.

## 1.3 CPS 특징

- ◆ 중장기 기획
  - CPS는 공여국의 원조전략 및 협력국의 개발과제, 협력환경 등을 고려한 국가별 개발협력전략으로, 자원배분<sup>3)</sup> 및 정책조정<sup>3)</sup>의 기준이 되는 전략기획(Planning)임.
    - ※ 전략기획은 결과중심주의(result-oriented) 관점에서 성과, 이의 달성방법, 성과측정·평가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책임.
    - ※ 성공적 기획을 위해서는 1. 성과의 지속적 창출(명확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환류, 제도화) 2. 정치적 합리성 도모(기획과정에서의 조직 내·외부인의 참여, 최고관리자의 적극적 지지와 관심)가 중요함 (나태준·김성준, 2003).
  - CPS는 국가의 기관전략으로서 자원의 배분과 성과를 강조하고 사업의 실행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정책도구로, 일반적·추상적·질적인 특징을 가짐(박홍윤, 2009).

2)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수립기능 강화(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제9조),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제13조).

3) 2016년 중점협력국 지원액은 총 1조 2천3백억원으로 양자 ODA재원의 73.3%임(제3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표 1] 전략적 기획의 유형

구분	기관전략	사업전략	기능별 전략
주요 책임자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자·최고관리자	기능별 관리자
기간	장기	중기	단기
전략의 범위	조직 전체	개별 사업	관련산업 및 기능
신축성	매우 신축적	신축적	신축성 낮음
조정 및 협동의 필요	높음	보통	낮음
구체성의 정도	일반적·추상적	구체적·실행적	특정성
양적·질적 특징	질적	양적	양적

※ 출처: 박홍운(2009)

◆ 대·내외 정치적 합의

-CPS 수립 시 개발도상국,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함.

※ 한국은 CPS 1차 초안 마련(관계부처협의회, 공관 해외사무소 의견 수렴)→수원국과의 사전정책협의  
→결과 반영한 2차 초안 마련→수원국 의견 수렴→3차초안 마련(관계부처협의회, 전문가간담회)→  
수원국과의 최종정책협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및 국개위 상정의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

## 1.4 한국의 CPS

- ◆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0.10)』에서 무상원조의 국가지원전략(CAS : Country Assistance Strategy)과 유상원조의 국가협력전략 및 사업(CCSP :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을 통합하여 2013년 CPS를 완료<sup>4)</sup>
- ◆ CPS는 5년 단위의 국가개발협력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에 이어 하향적(Top-Down)으로 수립되며,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구속력 부여, 신축적 조정 등의 개선이 제안되고 반영되어 옴([표 2] 참조).

[표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CPS 관련 주요 의결사항

회차(날짜)	내용
제14차(2012.12.)	• 국가협력전략 간결화, 중기 재원계획 및 제적과 성과목표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 「CPS 수립 가이드라인」작성 및 보완
제15차(2013.2.)	• (OECD Peer review 요구사항)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완성 및 공표, CPS 수립 시 개도국의 개발전략 및 정부의 모든 지원내용 포괄, 유·무상 원조전략 통합, 미래지원계획 포함, 원조효과성 제고 계획 및 달성목표의 명시, 협력국별 지원목적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정의 • 양성평등, 환경,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계획·지침을 강화하고 전략에 포함
제16차(2013.8.)	• 「CPS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4년 이후 수립되는 CPS에 적용
제17차(2014.1.)	•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에 CPS 특화된 평가질문이 부재하고 구체적 평가 미흡 • CPS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CPS 평가대상이 과다함(주요국 연간 3건 이내).

4) 2010년 「유·무상 통합 CPS 수립방안」이 마련되어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 2011년 베트남·가나·솔로몬군도 3개국에 대한 CPS를 작성하고 2012년 11개국, 2013년 8월까지 12개국에 대해 CPS를 수립하였음. 2015년 중점협력국을 24개국으로 재조정하였으며 2016년 말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관 및 수원국 의견수렴, 산업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2기 CPS 재수립을 완료함. 2020년 CPS 종료평가를 통해 중점 협력국을 재선정하는 상황임.

회차(날짜)	내용
제19차(2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협력분야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국가별로 동일하게 평가함. 또한 전략목표, 중간목표, 결과목표, 지수 등이 부재하여 이행점검 및 평가가 곤란</li> <li>• 정부 전체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지 않음.</li> </ul>
제22차(20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 CPS가 백과사전식 기술로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며 시행계획 수립과 별개로 운영됨.</li> <li>• 기계적 작성으로 질적 저하가 있고, 구속력이 없으므로 보완이 요구됨.</li> </ul>
제30차(201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 수립기한의 단축,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시기와 연동하여 탄력적 수립, 사업 및 예산편성과 연계, CPS 중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li> </ul>
제33차(20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종합전략 및 실질적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국가별 전략이 미흡</li> </ul>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을 토대로 저자 재]

## 2

##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 2.1 선행연구

- ◆ 국제경제연구소(2013)은 CPS 평가의 일반적인 틀은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지만 OECD DAC가 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
- ◆ 이 중 CPS는 기획인 바, 지속가능성, 적절성, 영향력의 성격을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3] OECD DAC의 개발협력 5대 가치

구분		내용
질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사업의 연속성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우선순위 부합도, 주인의식, 제도화 등에 좌우
	적절성(relevance)	• 협력국 수요 및 국내정책 수요,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정도
	영향력(impact)	• 지역·사회·경제·환경·문화적인 기여도 및 협력대상국의 역량강화 기여도
양적	효율성(efficiency)	• 경제적·시간적 투입을 고려한 성과도출로 이해관계자의 참여여부를 통해 제고 가능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의 달성 정도

※ 출처: 강인수(2005),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 ◆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연구는 기후변화 주류화와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구분될 수 있음. 기후변화 주류화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관점을 CPS에 도입할 수 있는 절차나 체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 연구는 보다 실무적인 지침들을 언급함.
- ◆ 가령,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대응역량, 재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정성·정량 지표를 수립하고, 국가 수준의 성과에 대한 목표설정과 전략도출 등을 강조(표 4) 참조).

[표 4] 기후변화 주류화 방법 및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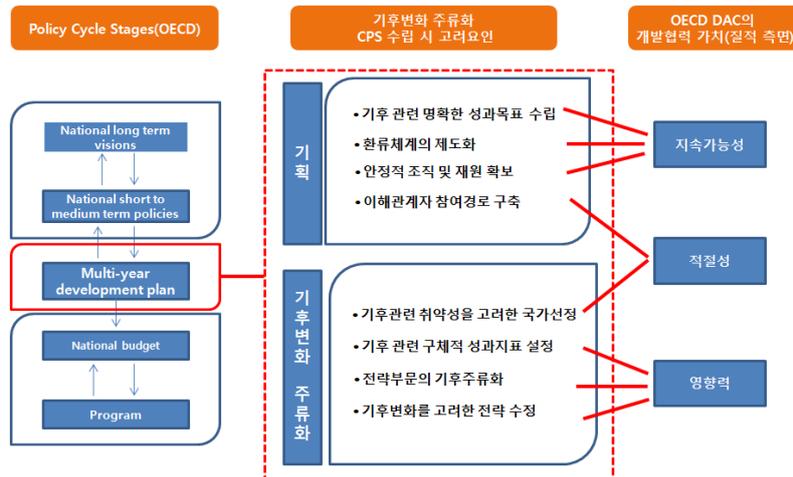
구분	출처	내용
기후변화 주류화	OECD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기후주류화 도모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협력의 개선·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실행 등을 반영을 강조하며 다년도 개발전략(Planning)에서 기후렌즈(Climate lens : 정책을 기후변화 대응관점으로 살펴보는 기준)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음.</li> <li>• 기후렌즈는 ①정책 및 계획이 기후변화위험에 취약한 지 ②정책 및 계획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③정책 및 제도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취약성이나 위험이 증가하는지 ④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및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핌.</li> </ul>
	UNDP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주류화 방식은 ①국가기후프로필 작성 ②제도의 관계도 작성 ③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한 문서, 이해관계자 선정 ④기후변화 위험과 기회평가 ⑤이해관계자 역량구축 ⑥기후변화 주류화 로 구성됨.</li> </ul>

구분	출처	내용
	홍은경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AID는 기후변화 대응분야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관 기준, 기후변화적응 기준으로 구분하고 효과성이 큰 국가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우선 기준을 정립함.</li> <li>JICA의 기후변화 협력전략(JICA Climate Change Cooperation Strategy)은 ①기후 복원적인 도시개발 및 인프라투자 증진 ②통합적 기후위험관리체계 강화 ③기후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 ④산림 및 생태계 보호관리 강화를 중시함.</li> <li>KOICA는 기후변화전략(2016-2020)에서 ①기후변화대응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②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③재정메커니즘을 통한 기후재원접근성 제고의 전략을 수립</li> </ul>
기후변화 국제협력	손승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원조사업을 지양하고 공동 R&amp;D, 교육훈련, 기술사업화 등을 종합한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양국간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원칙정립을 강조</li> <li>기술이전에 있어 ①온실가스 감축수요가 높은지 ②수요국에서 기술협력이 가능한지 ③재정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함.</li> </ul>
	권율 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S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①주요 목표성과와 지표의 구체적 제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②기술 협력과 자금협력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검토 ③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CPS에 프로그램 방식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전 주기에 걸쳐 추진 ④개발협력전략수립과 사업발굴에 있어 체계적인 환경규제가 적용되도록 CPS 차원에서의 원조방침을 규정 ⑤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CPS 단계에서 중점협력분야와 사업 연계성을 강화 ⑥CPS를 전략적 방침이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li> </ul>
	이태주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S 평가시 성과설정(국가수준성과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의도하고 있는지), 전략 및 프로그래밍(국가수준의 전략을 수립하고 국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지), 공여기관 측 M&amp;E 체계(국가협력전략과 국가수준성과에 대한 M&amp;E 체계가 마련되어 활용되는지), 수원국 측 M&amp;E(Monitoring &amp; Evaluation)역량(최소한의 거버넌스 수준을 충족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통계 시스템 등 M&amp;E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li> </ul>

## 2.2 연구의 분석틀

- ◆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
- ◆ CPS는 OECD 정책과정에서 「Multi-year Development Plan」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에 해당하는 바, 기획의 성공요인인 ①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② 환류체계 제도화 ③ 안정적인 조직 및 재원 확보 ④ 이해관계자 참여경로 구축이 구현되어야 함(나태준·김성준, 2003).
- ◆ 또한, 기후 주류화 관점에서 ① 기후 관련 취약성을 고려한 국가선정 ② 기후관련 구체적 성과자표의 설정 ③ 전략 부문의 기후주류화 ④ 기후변화를 고려한 전략 수정이 필요
- ◆ 해당 연구는 이러한 관점이 CPS가 목표로 고려해야 할 지속가능성, 적절성, 영향력과 연관된다 고 판단하였으며, CPS에 도입되어있는지를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제언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CPS에 기후변화 대응관점 반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 3.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

#### 3.1.1 기후변화와 관련된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 ◆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여야하며(OECD, 2019), OECD DAC(2013)의 동료평가(Peer review)가 강조한 대로, 모든 전략문서와 원조관리절차 등에 국제 협의 및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목표가 명시되어야 함.
  - 파리협정(2015)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을 위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로 공여국 관점, 개도국 관점,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관점에서 개발협력역할을 강조함<sup>5)</sup>(OECD 대한민국 대표부, 2015).
- ◆ 환경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역량을 강조하지만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파리협정, SDG 13에서 강조하는 기후변화대응이 명시되지 않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sup>6)</sup>은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SDGs의 기여만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음.
  - 2010년 수립된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2015)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를 강조하나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 및 이에 다른 시행계획에서 기후 관련목표를 제시하지 않음([부록 2]참조).

5) 공여국은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협력정책에서 기후관련 실행계획을 포함하며, 기존의 협력사업 모델 외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개발협력 논의 시 NDC와 저탄소개발경로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자원 및 자본시장의 발달을 촉진하여야 하고, 국제 개발협력 시스템 측면에서 지식 및 기술 공유, 조화로운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6) 제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1.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2.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3.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를 세부과제로 추진(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2019.10.22.)

**[표 5] 국제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관련규정**

구분	내용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1-2015) : 녹색성장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및 협력 대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li> <li>•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 : 기후와 관련된 명확한 성과목표 미제시</li> </ul>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16~2020):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1.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지원 로드맵 수립, 2.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지원 패키지형 시스템 구축,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등 자립역량 배양, 5. 기후변화 적응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 적응 이니셔티브 확보, 6. 글로벌 적응 아젠다 선도기반 조성 등을 강조</li> </ul>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 CPS는 개발협력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하향적으로 수립되는 전략으로「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기후변화 대응을 개발협력의 목표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후변화 관점을 고려할 수 있음.

**[표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b>기후변화 위협완화(추가)</b> ,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b>6. 기후변화 적응능력의 강화(추가)</b> , 7.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1.2 환류체계의 제도화

- ◆ 환류란 결과나 성과의 달성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CPS 평가 결과를 추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임. 특히 CPS 수립체계 내에서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면 지속가능성을 갖춘 CPS의 순환이 가능
  - 사업 시행기관은 자체평가 결과 반영계획 및 반영계획 이행 점검결과(매 반기)를 평가소위에 보고하며, 평가 우수기관 및 사례는 평가교육 과정 등을 통해 공유·확산
- ◆ 2013년 「국제개발협력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각 사업집행 주체ODA 사업의 결과를 평가소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자체평가결과를 평가소위원회에 심의하며, 자체평가결과 반영계획 이행점검 및 환류 기능을 수행함.
  - ※ 2010년부터 소위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① 소위평가: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가 국가별 분야별 주제별 등으로 매년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3자 평가 ② 자체평가: 사업 시행기관이 소관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
  - ※ 사업규모에 따라 평가대상 과제 수 차등: ▲ 상위기관(100억원 이상)은 사업 수의 10%, ▲ 중위기관(10~99억원)은 최소 2건, ▲ 하위기관(10억원 미만)은 격년별로 1건 이상<sup>7)</sup>
- ◆ 소위평가는 평가소위 의결을 거쳐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상위단계에서 전략, 주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함. 기후변화 관련하여 2017년에는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연구가 시도되었음.
  - 자체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는 미흡함. 차년도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현재는 각 부처·기관별로 개선과제를 도출, 이행과제를 국조실에 제출하는 정도임.
  - 상위규모(100억원 이상), 중위규모(10억~100억), 하위규모(10억 미만)으로 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국조실은 평가성 사정을 통해 사업규모가 작고 평가역량이 낮은 기관은 자체평가에서 제외함.
  - 자체평가에 대한 상세 매뉴얼에서 평가항목으로 기후변화 대응성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 또는 사업 평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고려를 했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음.
- ◆ CPS 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체 평가에 그치기도 하고 중간평가보다 사후평가 가가 이뤄진 경우 피드백을 통한 환류체계가 잘 이뤄지지 못함.
  - CPS 평가는 국별지원전략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CPS의 적절성, 전략 이행도, 중점 지원분야 성과 등을 분석함. CPS를 기반으로 CPS에서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국별평가가 이루어짐.
  - 예를 들어, 베트남 ODA 종합평가에서는 해당국가 CPS 중점분야(교육, 공공행정 물보건위생, 교통)에 해당하는 대표사업들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음.
- ◆ 한국은 SDG 이행목표 달성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업화, 보건, 물과 위생, 기아와 농업에 집중배분하기로 함. 이러한 영역들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가 시 기후위험 요소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sup>8)</sup>

7)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4-2호) 참조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2017, 110쪽.

- ◆ 국별<sup>9)</sup> CPS를 수립할 때 국가별 성과와 달성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에 있어 정기적 환류를 통해 조정해나가는 것을 제안함. 또한 [표 7]과 같이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시 수원국이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낼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부족한 경우 환류과정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틀의 마련이 필요함.

[표 7] 국별 CPS 단계별 환류체계 제도화(안)

CPS 단계	분석단위	환류체계 제도화
CPS 수립 및 이행단계	성과설정	• 국가수준성과 설정과 달성 목표에 대한 환류
	전략 및 프로그래밍	• 국별 전략과 프로그래밍의 정기적 환류
CPS 모니터링 및 평가단계	공여국 측 M&E 체계	• CPS와 국가수준성과에 대한 M&E 체계환류
	수원국 측 M&E 역량	• 수원국의 M&E 역량에 대한 환류

※ 출처: 조소희<sup>10)</sup>, p.243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 환류체계의 제도화는 CPS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의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기후정책과 법,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기술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한 역량강화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력의 시작단계에서 환류단계까지 모두 적용되는 주요한 제도임.

—상시적으로 기후변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기후위험 평가를 도입하고 CPS정책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책입안자와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단계별 역량강화를 통한 능력향상과 피드백 반응을 통한 정책 수정을 통해 환류체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음([표 8] 참고).

[표 8] 환류체계 제도화를 위한 기후변화 역량강화 방안

CPS 단계	분석단위	환류체계 제도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CPS전략, 목표, 원칙을 수립하는 위원 역량강화
	M&E 체계 확립	• 모니터링, 평가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
상시	인식제고	• 합동워크숍,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기후위험 평가 도입	• 사업담당자에게 기후위험 및 취약성 역량강화

※ 출처: 저자작성

### 3.1.3. 안정적 조직과 자원 확보

- ◆ 안정적 조직 및 자원 확보는 지속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요인이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판단됨.
- ◆ CPS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임. 국무총리 소속의 ODA 정책의 총괄조정과 결정기관으로, 2011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범위가 강화되고 있음<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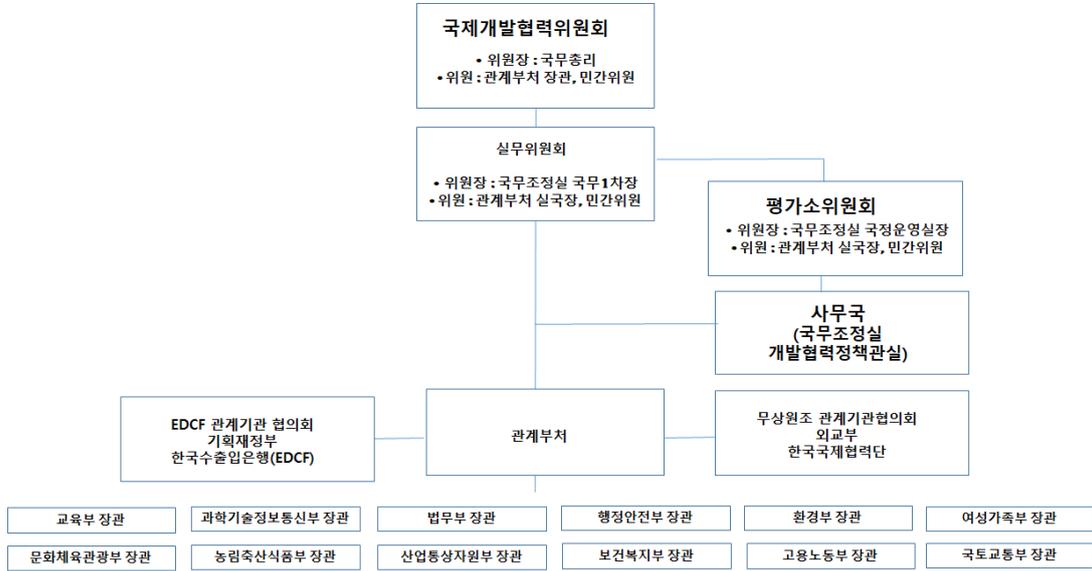
9) ADB의 경우 국별 평가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중점분야에 대한 평가 외에 공여기관의 중점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의 CPS 국별 평가에 있어서도 기후변화가 중점 정책방향으로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을 것임

10) 조소희, CPS 성과관리를 위한 국별 평가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 2013 참조

11) 2006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298호)이 만들어짐. 최초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만으로 구성되었으며 1. 국제적인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3.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추진전략의 수립 4. 국제개발협력의

-특히, 2020년 개정(법률 제17302호)에서는 CPS 업무가 강화되며(제7조), 안정적 조직체계가 구비되었음<sup>12)</sup>.

[그림 3] CPS 수립조직(국제개발협력위원회)



[표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CPS 강화

개정 이전(법률 제16023호, 2019. 6.25. 시행)	개정 후(법률 제17302호, 2020.11.27. 시행)
<p>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li> <li>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li> <li>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li> <li>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li> </ol>	<p>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li> <li>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li> <li>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li> <li>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li> <li>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li> <li>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p>	<p>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p>

평가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다름.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총괄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중기지원전략, 평가,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정책의 조정을 맡았고 유상협력과 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재부 장관, 무상협력과 그 외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 장관이 주관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구성됨. 2011년 개정(법률제10919호)에서 '분야별' 국제협력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업무가 신설되었고(제8조), 2014년 개정(법률 제11889호)에서 국제개발협력 시 여성·아동 외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제3조 제1항) 및 평가계획과 성과관리를 제도화함(제13조 제2항). 2015년 개정(법률 제12767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 의결권한이 부여되었고(제7조 제1항),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7조 제1항),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됨(제16조 제2항). 2018년 개정(법률 제16023호)에서 여성·아동·장애인 외에 청소년을 배려토록 하고(제3조 제1항),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지정함(제3조 제2항 제4호의 2).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증설(중전 25인에서 30인), 양성평등을 고려한 위원구성,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제9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제13조)

개정 이전(법률 제16023호, 2019. 6.25. 시행)	개정 후(법률 제17302호, 2020.11.27. 시행)
<p>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li> <li>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li> <li>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li> <li>4.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li> </ol>	<p>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심사하여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한다.</p> <p>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이하 생략)</p>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직은 안정적으로 구비되는 상황이나 나현 외(2016)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 조정능력이 미흡하고, CPS 작성체계가 분절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함을, 박정호·이환성(2016)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이 정무직 리더이며 민간위원은 8-9명임을 지적함.
- ◆ 기후변화 환경협력은 각 부처에서 전문분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sup>13)</sup>으로 기후변화 주류화 업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되려면 정치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위원회 조직보다는 사무국이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민간 기구에서의 상설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향후 업무가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sup>14)</sup>,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유사한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사무국 조직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예산<sup>15)</sup>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유사

### 3.2 적절성(relevance) 측면

#### 3.2.1 이해관계자 참여경로 구축

- ◆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수준(multi-level)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상호 간 대화를 증진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4)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프레임워크(APF : Adaptation Policy Framework)’에서 정책과정에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함.

13) 환경부는 기후변화 환경협력사업(2020년 예산 1,821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2020년 예산 1,977백만원), 기상청은 기후 과학 국제협력 역량강화 사업(2020년 예산 1,388백만원)을 부처 주요사업으로 추진(허가형·김윤희,2020)

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예산은 656백만원('17년)→657백만원('18년)→1,157백만원('19년)→1,347백만원('20년)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예산은 16.4% 증가함.

15) 규제개혁위원회의 예산은 845백만원('17년)→850백만원('18년)→1,031백만원('19년)→1,096백만원('20년)임.

- ◆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민주도형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가 있지만, 지방정부 주도로 관련 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구성에 있어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한계를 가짐.<sup>16)</sup>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기후변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고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점검<sup>17)</sup>하여 제도적 역량, 기후변화 이해도, 기후정의 관점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실무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함.
  - 가령,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내에서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등이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업무라면 각 해당부서의 민관협력 담당관이 조정(Control Tow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계, NGO, 국제기구 등이 소외되지 않게 실무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무위원의 조건(‘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에 추가하여 기후변화 전문가가 일정 비중으로 위촉되게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전문가가 CPS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EDCF, KOICA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민사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해 추진할 때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함.<sup>18)</sup>
- ◆ 특히, 향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기관은 외부평가 내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전문가를 필히 참여하도록 하고 10억원 미만의 기관은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절차 상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평가결과 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개선이 필요

### 3.2.2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중점협력국가선정

- ◆ 중점협력국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sup>19)</sup>로, 중점협력국 선정부터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sup>20)</sup>, 1·2기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은 소득수준과 외교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여부나 협력 가능성은 요건이 되지 않음.
  - 2010년 1차 중점협력국은 수원 필요성, 국제사회 원조기준,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소득수준, UN 인간개발지수, MDG 달성도, 외교적 관계, 지역별 안배 등을 지표로 하였음([표 10] 참조)
  - 2015년 2기 중점협력국 조정 시 정량평가 지표로 수원국의 발전수준, 수원국의 거버넌스, 우리나라와의 외교·경제적 관계지표, 정성평가로 관계부처 미 전문가 의견, 기존 운용성과, 잠재적 협력가능성 등이 활용됨.(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16) 김현민 외, 기후변화적응 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18, p.59 등 참조

17)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프로젝트관리와 평가: 프로젝트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론, 국제개발협력, 2009, p.16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8) 제45차 ODA 토크자료집 참고(<http://pida.or.kr/>)

19) 이시온(2017)에 따르면, 2017년 KOICA 사업예산 중 63%에 해당하는 210.417억원이 중점협력국에 할당됨.

20) 2기 중점협력국 지정을 위한 보고서(ODA 중점협력국 재조정방안연구, 동아시아 연구원 수행,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실 발주)는 비공개인 상황임.

[표 10] 1기 중점협력국 선정방법 및 활용 지표

구분		방법	국가 수	활용지표
1단계	원조대상국가 선별	정량	109개국	• 소득수준
2단계	1차 후보국 선정	정량	30개국	• 소득수준, UN 인간개발지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도 • 외교적 관계, 경제협력 잠재력 등 • 수원국 거버넌스, 공관 및 수행기관 현지 주재여부, 교민 수
3단계	1차 후보국 추가	정성	10개국	• 외교 및 경제적 요인, 수원지의지, 국가 부적절성(UN 제재국, 정정불안 등), 원조 소외국 여부
4단계	최종 선정	정성	26개국	•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 지역별 안배, 원조 소외국 여부

※ 출처: 박복영·이홍식·구정우(2013 :29·31)

- 아시아보다 아프리카처럼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 등이 중점협력국 선정에 고려되지 않아 ND gain 지수를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매우 낮은 모잠비크, 우간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점협력분야로 지정되지 않음.
- 애초에 기후변화협력의 효과가 큰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중점협력국 선정 시 기후변화 취약성 정도 점수 등을 도입하고 기후부문의 취약국(Fragile state)<sup>21)</sup>을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3.3 영향력(impact) 측면

#### 3.3.1 기후 관련 성과지표 활용

- OECD(2016)는 정책 수립, 목표 달성, 정책의 품질 향상, 학습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표가 필요하며 특히, 참여주체가 많은 관계형 계약(relational contracts)에서 정책목적 달성과 연관된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가 유효하다고 강조함.
  - 제3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그린 ODA 확대를 위하여 리우마커 외 국제지표를 고려할 것을 제시함.
- 현재 UNFCCC가 활용하고 있는(김지환 외, 2017)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sup>22)</sup>를 CPS 수립 및 환류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가·분야별 전략 수립단계부터 ‘기후 및 재해 위험 스크리닝 도구(Climatic and Disaster Risk Screening Tool)’<sup>23)</sup>를 활용하며, 기후변화 추세 및 예측통계, 제도적 준비 스코어카드(IRS: Institutional Readiness Score card) 등의 계량지표를 사용함(정지원 외, 2017b).

21) 취약국이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로 OECD DAC는 국민들의 빈곤 감소, 개발, 안보 및 인권 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의미함(이승철, 2017)

2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누가(Who), 어디서(Where), 언제(When), 왜(Why), 어떻게(how) 기후요인에 취약한지, 기후요인(climate stressors)이 비기후요인(non-climate stressors)보다 얼마나 중요한지(how important) 등을 설명하는 과정(Cook, J.& Reed, J. F. 2016)

23) ① 프로젝트 및 사업 대상지역의 위험, ② 위험이 초래할 잠재적 영향력 평가, ③ 제도적 역량 및 거시 경제·사회적 환경의 영향력, ④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져올 위험의 감소 정도를 판단함.

- ◆ IRS의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공개되어있지 않으나, 개발도상국 및 개발 분야의 제도적·적응적 능력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음.
  -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적응사업위험관리제도(systematic risk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적응 사업 수행시 기후여건을 평가,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기여여부 확인, 적응사업의 전략방향 개발, 지표 정의 및 기준치 설정, 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등을 행함(이정호, 강주연, 2015).
- ◆ 기후변화 취약성, 협력사업의 성과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는 리우마커, ND-gain 지수, German watch의 기후 취약성 지수,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EPI) 등을 활용할 수 있음([표 11] 참조).

[표 11] 기후관련 대내·외 지표

구분	내용
리우마커 (Rio ma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우환경협약(1992년)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원의무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DAC가 2009년 도입한 통계마커</li> <li>• DAC 회원국은 양자간 ODA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완화·적응(UNFCCC), 생물의 다양성 보존(UNCBD), 사막화 방지(UNCCD) 지원 여부를 보고함</li> <li>• ①생물 다양성 ②기후변화 감축 ③사막화 방지 ④기후변화 적응으로 구성됨.</li> </ul>
ND-Gain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사회적 형평성, ICT 인프라, 교육 및 혁신 정도), 경제적(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투자의 수용능력), 거버넌스(적응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제도역량)의 능력을 계량화하여 평가.</li> </ul>
German Wat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를 개발하여 매년 국가의 순위와 점수를 발표하고, 10대 기후취약성 국가를 선정</li> <li>• 사망률(number of deaths), 정주민구 10만명 당 사망률(number of deaths per 100,000 inhabitants), 구매력 손실정도(sum of losses in US\$ in purchasing power parity), 국내총생산 손실정도(losses per unit of gross domestic product) 사용.</li> </ul>
환경성과지수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각 국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경험적, 정량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개발된 지표</li> <li>• 2020년 기후변화 관련 지표로 CO2 증가율, CH4 증가율, F-Gas 증가율, N2O 증가율, 블랙카본 증가율, 육상탄소배출, 온실가스 집약도 증가율, 온실가스배출량/인 을 사용</li> </ul>
K-SDGs의 기후변화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수립·이행지원건수(건),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기후변화 적응인지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을 기후대응지표로 사용</li> </ul>

※ 출처: 지수 생산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저자정리

- ◆ 한국은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sup>24)</sup>으로, 환경부의 MOTIVE가 개발하는 정책도입 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정량화하는 예측기술을 CPS 작성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 다만,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중시해야하는 개발협력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종합하여 활용하여야 함<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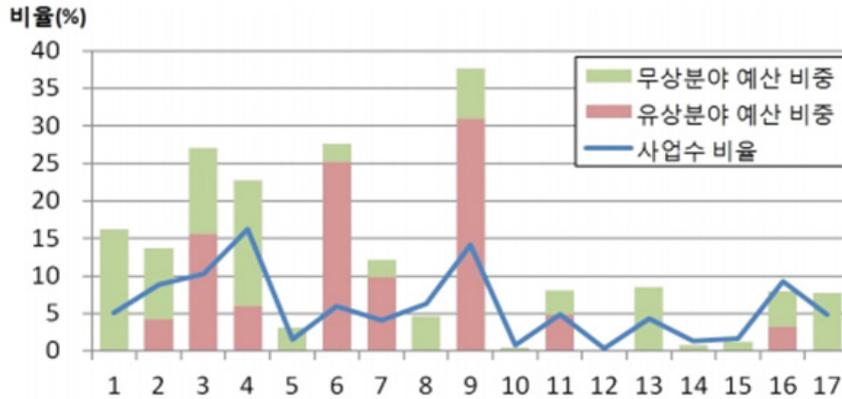
24) 2012년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GIS 기반 기후변화 적응도구(CCGIS)'를 활용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환경부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하여 260억 원의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MOTIV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연구단을 설립하였음.

25)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크게 하향식 접근법(중앙정부의 주도, 혹은 전 지구적인 기후 시나리오 등에 기초하여 온실 가스 배출 등의 물리적인 취약성을 평가)과 상향식 접근법(지자체의 주도로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경제, 기술, 정보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취약성에 주목)으로 분류하며, 두가지 관점이 종합된 평가가 이상적이라고 평가함(국가기후변화 적응포털).

### 3.3.2 전략 부문의 기후 주류화

- ◆ 한국은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등 범분야 이슈의 주류화를 위한 계획·지침을 강화하고 전략체계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CPS 수립시 기후주류화가 제도화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함(그림 5)참조).

[그림 5] 2019년 SDG 분야별 예산



SDG 분야 : 1.빈곤 2.기아 3.보건 4.교육 5.양성평등 6.물 7.에너지 8.일자리  
9.산업 10.불평등 11.도시 12.SCP 13.기후변화 14.해양 15.육상 16.거버넌스 17.파트너십

※ 출처: ODA 통합홈페이지

- ◆ 현 CPS는 개발도상국의 국가전략에서 기후전략반영도 미흡함.
  - 아시아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국 중 하나인 스리랑카의 CPS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였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가 고려되지 않고(정지원 외, 2017a),
  - 페루 CPS에서는 환경보호를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재난위험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아마존지역 습지대 보존 등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원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는 없음(정지원 외, 2019).
  - 방글라데시·라오스·미얀마·몽골·페루·르완다·모잠비크·에티오피아는 국가개발전략에 기후변화 필요를 명시하고 있으나, 페루를 제외하면 한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목표는 수립되지 않음. - 특히,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등은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목표를 수립하였고 NAP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음([표 12] 참조).

[표 12] 2기 CPS에서 기후변화 목표 및 자료 반영 여부

지역	기후변화 관련목표 (개도국/한국)	SDG-13	Climate Change Policy(보유/검토)	NAP(보유/검토)	
아시아	네팔	X/X	△	O/X	X/X
	방글라데시	O/X	△	O/X	O/X
	스리랑카	X/X	△	O/X	O/X
	파키스탄	X/X	△	O/X	O/X
	라오스	O/X	△	O/X	X/X
	미얀마	O/X	△	O/X	O/X
	베트남	X/X	△	O/X	O/X

지역		기후변화 관련목표 (개도국/한국)	SDG-13	Climate Change Policy(보유/검토)	NAP(보유/검토)
	캄보디아	X/X	△	O/X	O/X
	인도네시아	X/O	△	O/X	O/X
	필리핀	X/X	△	O/X	O/X
	몽골	O/X	△	O/X	X/X
	우즈베키스탄	X/X	△	O/X	X/X
	아제르바이잔	X/X	△	O/X	X/X
라틴 아메리카	볼리비아	X/X	△	O/X	X/X
	콜롬비아	X/X	△	O/X	O/X
	파라과이	X/X	△	O/X	O/X
	페루	O/O	△	O/X	X/X
아프리카	가나	X/X	△	O/X	O/X
	르완다	O/X	△	O/X	X/X
	모잠비크	O/X	△	O/X	X/X
	세네갈	X/X	△	O/X	X/X
	에티오피아	O/X	△	O/X	X/X
	우간다	X/X	△	O/X	X/X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ND-gain 지수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 ◆ 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기후변화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CPS 수립시 기후렌즈를 활용함  
 ① CPS가 기후변화 취약성 ② CPS가 기후변화 영향고려정도 ③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의 취약성이나 위험이 증가하는지 ④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CPS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국제금융기관은 기후변화 주류화 원칙으로 ①기후변화 지원전략 ②기후위험관리 ③기후 스마트한 목적 추구 ④성과 개선 ⑤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며(정지원, 2017),
- ◆ OECD(2009)는 기후주류화를 위한 기후렌즈(Climate lens)를 강조함. USAID는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수립 시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과 기회요인을 고려함(정지원 외, 2019).
- ◆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개발협력의 특정관점에 속하는 양성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호주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젠더와 개발 정책, 가이드라인 보유, 사업주기별 체크리스트제시, 전체 원조금액의 51%를 양성평등에 직간접 지원하여 향후 목표치를 80%로 설정하였고,  
 -독일은 정부 및 시행기관 차원 양성평등 전략 및 지침 보유하며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젠더 마커 부여 의무화 및 관련 지침발간, 원조금액의 42%를 양성평등에 직간접 지원하고 있음.

- ◆ 단기적으로 CPS 중점협력국가는 기본기후계획(Climature Change Policy)<sup>26)</sup>, 자체 NAP (National Adaptation Plan) UN 산하 국제기구에서 NAP를 위한 보고서나 메커니즘이 있으므로, 이에 더해 적응관련 국제기구 보고서<sup>27)</sup> 등을 검토하고 반영한 CPS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현재 중점협력 후보분야 중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교육(SDG 4), 산업(SDG 9), 거버넌스(SDG 16), 보건(SDG 3), 기아(SDG 2) 외에 기후변화(SDG 13) 부분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전체 원조금액의 일정비율을 기후변화에 사용한다는 지원목표를 설정

### 3.3.3 기후변화를 고려한 전략수정

- ◆ CPS는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의 변경, 주요 기후지표 제시시점, 사업이 평가 등의 따라 좀더 신속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CPS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어야 함.
- ◆ 기후모니터링은 ①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대한 취약성 변화의 추이; ②적응대책이 국가적응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③기후위험이 장기 정책결정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김현민 외, 2018)
- ◆ CPS는 중간점검 및 종료평가(종료 6개월 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는 바 통합전략협의체나 ODA 현지협의체를 통한 상시모니터링과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 설정이 필요함.
  - 2017년 12월 CPS 중간평가 후 CPS 수정·보완을 추진하기로 의결된 이후 2018년 3~8월에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이다, 필리핀 에 대한 CPS 수정이 이루어짐.
  - 기후변화 취약국인 미얀마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교육을 신규 중점분야로 추가하고, 필리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가 행해짐.
  - CPS는 5년을 주기로 설정되는데, 기후부문은 지표가 발표되는 매년 또는 격년을 주기로 상황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함. 특히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CPS 보다 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6) 환경정책 안에 기후분야가 포함되기도 하고 기후정책을 따로 강조하기도 함. UNFCCC에 국가별로 공식적인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된 국가는 20여국에 달함(UNFCCC 홈페이지)

27) UNDP는 아프리카 37개국, 아랍권 18개국, 아시아 36개국, 유럽 및 중앙아시아 33개국, 남미 및 카리비안 국가 33개국을 포함 157개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함(<https://www.adaptation-undp.org/>)



## 결론

-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주류화 관점의 CPS를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정책 차원에서 검토하였음.
  - OECD의 Policy Cycle Stages, OECD DAC의 개발협력 가치 등에 기초하여 지속가능성, 적절성, 영향력 측면이 제3기 CPS의 기후변화 섹터에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틀임.
- ◆ 먼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환류체계의 제도화. 안정적 조직과 재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 시행 과정에서 모든 전략문서와 원조 관리 절차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시되어야 하나, 현행 CPS 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추상적인 목표 하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CPS 평가시스템은 자체평가에 그치고 있음. 반면 선진공여기관의 기후변화 원조 전략 마련 과정에서는 기후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도국의 현실과 밀접한 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적절성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경로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한 중점협력국가 선정이 반영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기후변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며, 민관협력(PPP)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함께 개발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구도를 제안함.
  - 1·2기 중점협력국 선정은 소득수준으로 주로 고려하였다고 판단됨. 즉,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부문 취약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는 등 CPS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 ◆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후 관련 성과지표 활용, 전략 부문의 기후 주류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전략 수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표되는 신뢰성 있는 국제지표들을 활용하여 중점협력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환경부의 MOTIVE가 개발하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정량 기술을 활용함.

- 이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CPS 상에 균형 있게 반영하여 CPS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함.
- 한국은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등 범분야 이슈의 주류화를 위한 계획·지침을 강화하고 전략체계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CPS 수립 시 기후주류화가 제도화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음.
-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의 변경, 주요 기후지표의 제시 시점, 사업 평가 등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신속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별도의 CPS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어야 함.
- ◆ 지금까지 언급한 고려사항을 제3기 CPS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 조직, 예산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박홍윤(2009)이 전략적 기획의 성공조건<sup>28)</sup>으로 강조한 바대로 CPS 수립 과정에서 최고관리자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섹터의 제3기 CPS 수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가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황으로,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표 13] 기후변화 주류화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

고려요인	내용	정책제안
명확한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li> <li>•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기후변화 성과목표가 반영되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 개정</li> </ul>
환류체계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이 CPS에 반영되는 체계인가?</li> <li>• 수원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CPS에 환류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포함한 CPS 평가 메뉴얼 개발 및 활용</li> </ul>
안정적 조직과 재원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충분히 조정되고 있는가?</li> <li>• 기후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li> <li>• 조직이 유지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에 기후변화 주류화 CPS를 수행하는 상설 조직 구비</li> <li>• 기후변화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li> <li>• 예산 확보</li> </ul>
이해관계자 참여경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전문가가 CPS에 참여하고 있는가?</li> <li>• 기후변화 전문가의 참여경로는 안정적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의 민관협력 담당관 업무에 기후변화 CPS 검토를 규정</li> <l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일정비율로 할당하고 의견반영을 의무화</li> <li>• 기후변화 전문가가 CPS를 작성하여 제안</li> </ul>
기후변화 고려한 중점협력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협력국 선정 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고려되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협력국 선정지표에 기후변화취약성 점수 반영</li> <li>•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별도규정 수립</li> </ul>
기후관련 성과지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 작성에서 기후변화 관련지표를 활용하였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개발협력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모형 개발</li> <li>• CPS 작성 및 수정시 리우마커, ND-gain지수, EPI 등의 지표 활용 의무화</li> </ul>
전략부문의 기후주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 작성시 기후렌즈를 활용하였는가?</li> <li>• 개발도상국의 기후전략을 반영하였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렌즈를 활용하도록 하는 CPS 작성 메뉴얼을 수립</li> <li>• 개발도상국의 기후부문 국가개발전략 반영</li> <li>• 기후변화(SDG-13) 부문의 전략적 추진</li> </ul>
기후변화를 고려한 전략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S는 기후변화정도를 반영하여 수정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관련 성과지표가 발표되는 매년 또는 격년을 주기로 하여 기후부문의 CPS 검토</li> </ul>

28) ①최고관리자의 적극적 지지와 관심 ②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참여 ③계선관리자의 주요 업무화 ④조직 예산·성과관리와의 통합 ⑤명확한 목표 및 방향설정과 성과측정 ⑥지속적 학습과정 ⑦집행가능성의 고려

## 참고문헌

### 〈저널 및 연구보고서〉

- ◆ 강인수·장준영·Daw Cho Cho Thein (2015). 미얀마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 ODA 정책 연구 1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관계부처 합동 (2020).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 국제경제연구소 (2013). 국가협력전략 평가틀 구축 및 시범평가 실시. 국무조정실.
- ◆ 권율·이상미·유애라 (2015).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방향과 CPS 개선방향 : ODA 정책연구 1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김지환·송재령·문지연·강현주 (2018). 기후변화 개발협력 역량강화 연구. 녹색기술센터.
- ◆ 김현민·김민철 (2018). 기후변화적응 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59.
- ◆ 나태준·김성준 (2003). 공공조직의 전략기획체제 구축방안. 기본 연구 최종평가자료 2003-R-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공동성·이동훈·박재희 (2016).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국정관리연구, 11(1), 51-78.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ODA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110.
- ◆ 동아시아연구원 (2014).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 방안 연구용역.
- ◆ 박복영·이홍식·구정우 (2013).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KIEP] 연구보고서, 2013(12), 0-0.
- ◆ 박정호·이환성 (2016). 무상원조사업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가별 심사 강화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6-33, 한국행정연구원.
- ◆ 손승우 (2017). 신기후 체제에 따른 기술협력 모델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이승철 (2017). OECD 취약국 지원 원칙이 KOICA 취약국 지원 전략에 주는 시사점.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2(2), 75-92.

- ◆ 이시온 (2017). 제 2 기 국가협력전략 (CPS) 에 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 중기 (2017-2020) 예산 연구 및 정책 시사점.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2(4), 167.
- ◆ 이재완 (2015). 국제개발협력평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 ◆ 이정호·강주연 (2015).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0(4), 103-117.
- ◆ 이희연 (2014).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실태와 기후변화 대응 과제. *환경논총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 ◆ 정지원·문진영·이주영·송지혜·오혜경 (2017).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최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정지원·송지혜·김진오·현채원 (2019).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KIEP] ODA 정책연구, 19(04), 1-158.
- ◆ 정지원·송지혜·이상미·오혜경·명수정 (2017).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KIEP] ODA 정책연구, 17(04)
- ◆ 조소희 (2013). CPS 성과관리를 위한 국별 평가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
- ◆ 한국국제협력단 (2013), CPS 성과관리를 위한 국별 평가방안 연구 : 시범국-파라과이.
- ◆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2009). 프로젝트관리와 평가: 프로젝트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론. 국제개발협력, 167.
- ◆ 허가형·김윤희 (2020).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 ◆ 홍은경 (201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ODA 사업 방향성 논의 : 외국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KOICA의 기후 전략 및 정책사례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 Cook, J., Reed, J. F. (2016). *Climate Vulnerability Assessment: An Annex to the USAI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Framework*.
- ◆ OECD (2009).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 Policy Guida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OECD (2016). *Using outcome Indicators to Improve Policies: Methods, Desig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6/02.
- ◆ OECD (2019). *The Only Way Forward :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 The Development Dimension*.
- ◆ OECD DAC (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Korea*.
- ◆ UNDP (2012).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in National Development Processes and UN Country Programming : A guide to assist UN Country Teams in integrating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 〈단행본〉

- ◆ 박홍윤 (2009).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p. 17-42). 서울: 대영문화사.

## 〈웹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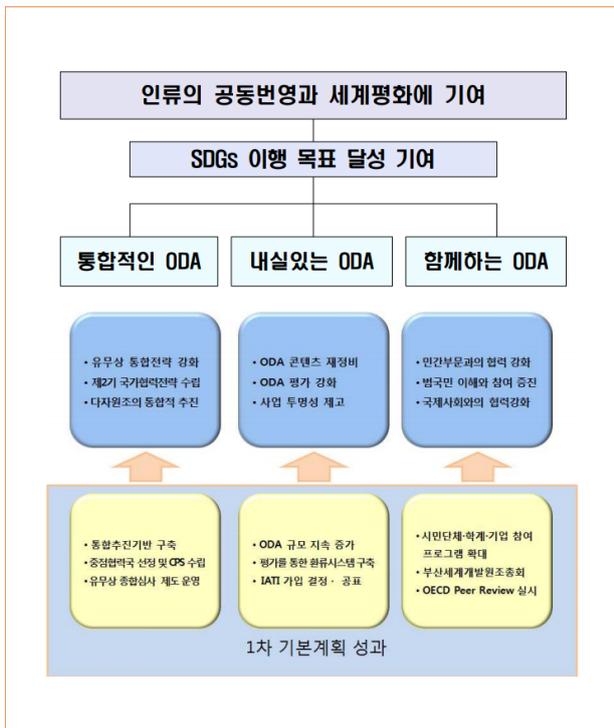
- ◆ ODA Korea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
- ◆ UNDP Climate Change Adaptation. <https://www.adaptation-undp.org/>
-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국가적응역량지수’.  
<https://www.ctis.re.kr/ko/analysis/adaptation.do?key=1454>
- ◆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 ‘취약성 평가’.  
[https://kaccc.kei.re.kr/portal/detailAdapt/adapt\\_vulne/adapt\\_vulne\\_view.do?num=2](https://kaccc.kei.re.kr/portal/detailAdapt/adapt_vulne/adapt_vulne_view.do?num=2)
- ◆ 발전대안 피다. <http://pida.or.kr/>
- ◆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oecd-ko/index.do>.
-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ksdgs>
- ◆ 환경부 ‘전국단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실시’.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s78UymT62EpStEwT8ZAtLD-.mehome2?pagerOffset=52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180172&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https://germanwatch.org/en/CCPI>
-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https://epi.yale.edu/>
- ◆ MOTIVE ‘연구개요’. <http://motive.kei.re.kr/home/intro/int030011.do>
- ◆ National Adaptation Plans.  
[https://www4.unfccc.int/sites/NAPC/News/Pages/national\\_adaptation\\_plans.aspx](https://www4.unfccc.int/sites/NAPC/News/Pages/national_adaptation_plans.aspx)
- ◆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https://gain.nd.edu/>
- ◆ Riomarker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topics/Climate-related-development-finance-in-2018.pdf>

## [부록 1] 1·2기 중점협력국의 기후취약성 정도

지역		1기(2010-2015)	2기(2015-2020)	ND gain지수(2009/2014/2018)
아시아	네팔	○	○	42.45/45.11/40.95
	방글라데시	○	○	39.49/41.05/36.02
	스리랑카	○	○	48.52/51.21/46.06
	파키스탄	○	○	43.14/44.38/37.54
	라오스	○	○	40.23/44.82/38.89
	미얀마	-	○	34.15/36.96/36.07
	베트남	○	○	49.43/52.09/47.01
	캄보디아	○	○	36.70/43.28/39.29
	인도네시아	○	○	48.31/51.02/47.07
	필리핀	○	○	47.03/50.84/43.58
	몽골	○	○	49.88/53.98/52.1
	우즈베키스탄	○	○	44.11/47.98/47.6
	아제르바이잔	○	○	52.69/54.57/50.3
	동티모르	○	-	37.01/41.43/43.8
라틴 아메리카	볼리비아	○	○	41.88/43.99/40.5
	콜롬비아	○	○	52.51/56.00/48.38
	파라과이	○	○	48.89/50.10/47.43
	페루	○	○	50.25/53.18/48.80
아프리카	가나	○	○	46.33/48.60/44.35
	르완다	○	○	37.35/41.35/43.12
	모잠비크	○	○	38.64/38.87/37.40
	세네갈	-	○	39.84/42.34/40.94
	에티오피아	○	○	37.33/39.85/36.83
	우간다	○	○	33.11/33.45/34.97
	탄자니아	-	○	41.07/40.66/37.98
	카메룬	○	-	39.94/41.34/38.62
	DR콩고	○	-	29.98/32.52/30.77
	나이지리아	○	-	38.35/39.76/36.31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ND-gain 지수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부록 2]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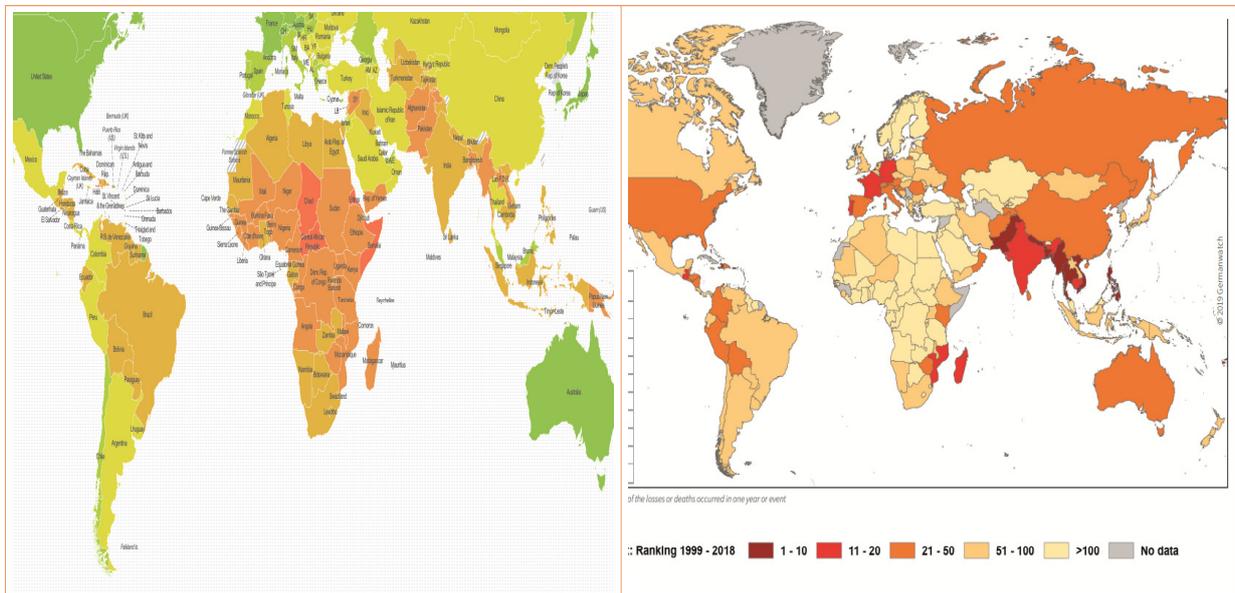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부록 3]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ND-Gain Index(2018)·Climate Risk Index(2000)



※ 출처: <https://gain-visualization.crc.nd.edu/index>

## [부록 4] 주요 공여국의 Rio Marker(2018)

단위 : USD thousand

지역	감축관련 개발금융		적응관련 개발금융		기후관련 개발금융	
	principle	significant	principle	significant	principle	significant
한국	7,756	16,453	31,436	91,184	54,505	127,262
룩셈부르크	1,175	7,278	157	10,997	4,410	21,575
스위스	5,177	40,951	39,701	141,662	103,340	280,439
오스트리아	151,550	24,203	8,725	62,732	169,718	111,806
체코 공화국	1,415	327	1,984	2,948	3,399	4,131
덴마크	59,351	2,186	13,421	111,560	103,540	194,047
벨기에	24,646	78,075	6,006	61,586	38,744	242,398
핀란드	900	38,113	3,472	29,626	7,988	100,078
프랑스	39,123	724,551	2,420	308,818	48,211	1,428,861
독일	3,486,074	573,600	562,467	1,611,258	4,048,540	3,956,315
영국	667,557	69,226	24,626	149,556	1,518,419	436,100
아이슬란드	232	2,768	140	3,378	486	8,623
아일랜드	590	2,708	13,621	42,063	21,301	51,800
네덜란드	60,968	55,754	35,255	331,875	199,932	684,496
노르웨이	697,993	88,550	109,383	29,875	870,942	159,486
스웨덴	73,697	231,662	89,169	460,428	386,663	1,047,347
폴란드	377	143	59,019	3,548	59,650	3,710
포르투갈	617	62	1,297	1,818	1,914	2,780
스페인	4,932	21,944	15,091	75,106	53,233	151,965
오스트레일리아	12,885	6,169	488	108,444	41,980	271,055
뉴질랜드	346	2,480	2,283	36,322	18,743	56,288
미국	443,474	96,598	44,041	195,921	646,172	399,616

\* 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 주요사업[[C20211]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정책·제도 분석연구: UNFCCC·IPCC·SDG·CPS를 중심으로]으로 수행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집필진

### [내부]

이기영 leeky@gtck.re.kr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연구원

김민철 eco@gtck.re.kr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 [외부]

윤나영 purplena01@gmail.com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과정

**2020** Vol.1 No.1

The logo for GTC FOCUS features a stylized green 'G' icon on the left, followed by the letters 'GTC' in a bold, green, sans-serif font, and the word 'FOCUS' in a larger, bold, green, sans-serif font to the right.

**발행인** 정병기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처** 녹색기술센터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전화** 02.3393.3961

**팩스** 02.3393.3919~20

**홈페이지** <http://www.gtck.re.kr>

**I S S N** 2734-1437(오프라인)

**디자인** 리드릭 02.2269.1919



**GTC**  
**FOCUS**

**GTC**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Tel. 02.3393.3900  
Fax. 02.3393.3919~20  
[www.gtck.re.kr](http://www.gtck.re.kr)

GTC FOCUS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정책, 국제협력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사·분석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본 GTC FOCUS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